

# 斷種,落胎 訴訟의 經過 및 意義

2017. 6. 22.

한센인권변호단

徐重熙 辯護士

# 目次

- 訴提起 理由
- 進行經過
- 判決現況
- 事實認定
- 賠償責任
- 消滅時效
- 慰藉料
- 訴訟의 意義

# 斷種臺

• 李東

그 옛날 나의 사춘기 시절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해가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미래알처럼 번성하라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 訴提起 理由

- 단종, 낙태는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격리, 폭행, 감금, 강제노역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중 반인륜적 인권주제 - '자녀를 보고 싶은 천륜'을 부인 당함. '모래알처럼 번성 하리라'던 신의 섭리의 대상에서 배제됨.
-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상징성
- 단순한 '생활지원'을 넘어 '일괄배상' 법안 촉구
- 입증의 문제를 고려

# 進行經過

순번	원고	사건번호	진행경과	비고
1차	강성구 외 202	서울중앙 2011가합108342	2011. 10. 17. 제소 ~ 2015. 2. 12. 선고	최초 소송제기
		서울고등 2015나2017218	2015. 3. 25. 항소 ~ 2016. 10. 4. 선고	
		대법원 2016다267920	2016. 10. 20. 상고 ~ 2017. 3. 30. 선고	파기 환송
2차	강선봉 외 173	서울중앙 2012가합501276	2012. 1. 16. 제소 ~ 2015. 5. 20. 선고	
		서울고등 2015나2029815	2015. 6. 19. 항소 ~ 2016. 11. 29. 선고	
		대법원 2017다202654	2016. 12. 20. 상고 ~ 2017. 6. 15. 선고	파기 환송
3차	강영주 외 18	순천지원 2013가합10285	2013. 3. 18. 제소 ~ 2014 .4. 29. 선고	최초 판결선고
		광주고등 2014나11542	2014. 5. 13. 항소 ~ 2014. 10. 22. 선고	
		대법원 2014다230535	2014. 11. 11. 피고상고 ~ 2017. 2. 15.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
4차	엄수진 외 138	서울중앙 2013가합521666	2013. 5. 21. 제소 ~ 2015. 7. 16. 선고	
		서울고등 2015나2040959	2015. 7. 31 항소 ~ 2016. 9. 23. 선고	소록도특별법정
		대법원 2016다260646	2016. 10. 11. 상고 ~ 2017. 5. 11. 선고	파기 환송
5차	김복덕 외 4	서울중앙 2015가합503228	2015. 1. 13. 제소 ~ 2015. 10. 2. 선고	
		서울고등 2015나2060823	2015. 10. 22. 피고항소 ~ 2016. 11. 29. 선고	
		대법원 2017다202166	2016. 12. 20. 상고 ~ 2017. 5. 31. 선고	파기환송
6차	고흥남 외 4	서울중앙2015가단5359955	2015. 11. 13. 제소	1심 계류 중(추정)

# 判決現況

차수	구분	1심 판결 현황			2심 판결 현황			3심 판결 현황			비고
		단종	낙태	소계	단종	낙태	소계	단종	낙태	소계	
1차	인용	171	12	183	184	16	200	184	16	200	파기환송
	기각	16	4	20	3	0	3	0	0	0	
	소계	187	16	<b>203</b>	187	16	203	184	16	200	
2차	인용	44	91	135	50	124	174	50	124	174	파기환송
	기각	6	33	39	0	0	0	0	0	0	
	소계	50	124	<b>174</b>	50	124	174	50	124	174	
3차	인용	9	10	19	9	10	19	9	10	19	상고기각 원심확정
	기각	0	0	0	0	0	0	0	0	0	
	소계	9	10	<b>19</b>	9	10	19	9	10	19	
4차	인용	22	117	139	22	117	139	22	117	139	파기환송
	기각	0	0	0	0	0	0	0	0	0	
	소계	22	117	<b>139</b>	22	117	139	22	117	139	
5차	인용	0	5	5	0	5	5	0	5	5	파기환송
	기각	0	0	0	0	0	0	0	0	0	
	소계	0	5	<b>5</b>	0	5	5	0	5	5	
합 계	인용	224	235	269	265	272	537	265	272	537	6차 제외
	기각	44	37	81	3	0	<b>3</b>	0	0	0	
	소계	268	272	<b>540</b>	268	272	540	<b>265</b>	<b>272</b>	<b>537</b>	
6차 (2명)	인용										1심 추정
	기각										
	소계										

# 事實認定

- 원심은, 원고들이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운영, 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부산용호병원(상애원), 국립익산병원(소생원), 국립칠곡병원(애생원), **안동성좌원, 여수애양원, 밀양신생원** 등에 입원해 있다  
가,
- 1947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소속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의료보조원 등**으로부터, 정관절제 또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7.3.30. 판결).

# 賠償責任

- 피고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 등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그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수술이 행해진 시점에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한센병의 유전위험성과 전염위험성, 치료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수술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들은 한센병이 유전되는지, 자녀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 교육,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보일 뿐 그들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는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7.2.15. 판결).



# 消滅時效

- 원심은, 한센인피해사건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원고들에게는 **그 결정 시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통한 피해보상 등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7.2.15. 판결).

# 慰藉料

-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서 그 시대와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 임신한 여성에게 행해진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성과 침습의 정도가 중하고,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경험치상 강제로 모성을 상실당한 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로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보다 심각하다.
- 피해발생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고, 피해자의 숫자도 많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들 상호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2.15.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달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3.30. 판결).

# 한센 訴訟의 意義

- 한센인, 한센병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
- 한센인에 대한 단종, 낙태라는 **피해사실의 확인 및 진상규명**, 국가가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그 **반성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사실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확인절차**
- 개별 소송을 통한 최소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 실현 및 향후 한센피해자법 개정 등 한센인들의 생활개선과 안정을 위한 **지속적 활동의 일환**
- 한일변호사간의 국경을 넘어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매개로 한 동지적 **연대의 결과물**
- '**인권**'의 측면에서 한센일본보상, 한국단종낙태소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해법** 제시가능